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13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 박성훈·김성원·이헌승

이달희 · 김기현 · 이인선

고동진 · 임이자 · 김위상

이상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함.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환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소요된 피해학생의 상담·치료 등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그책임을 명확히 하고,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상환을 청구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도록 하여 상환 청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6조).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 본문 중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비용(교통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은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상환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제16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환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환을 청구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	6		
문가로부터 제1항제1호부터 제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u>비용</u>	발용		
<u>은 가해학생의 보호자</u> 가 부담	(교통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는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은 가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	l		
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			
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			
담하고 이에 대한 상환청구권			
을 행사할 수 있다.			
<u><신 설></u>	⑦ 가해자 또는 가해학생의 보		
	호자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상		
	환을 청구 받은 경우에는 청구		
	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u> 상환하여야 한다.</u>		
<u>⑦</u> ・ <u>⑧</u> (생 략)	<u>⑧</u> ・ <u>⑨</u> (현행 제7항 및 제8항		

과 같음)